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호외(號外) 1927(昭和 2)년 8월 31일 수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73호(號)

철도성선(鐵道省線)과 조선(朝鮮) 및 만주(滿洲) 간(間) 발착하물통관취급규칙(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27(昭和 2)년 8월 31일

조선총독 임시대리(朝鮮總督臨時代理)

육군대장(陸軍大將)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철도성선(鐵道省線)과 조선(朝鮮) 및 만주(滿洲) 간(間) 발착하물통관취급규칙(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

제1조 철도성선(鐵道省線)과 조선(朝鮮)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로서 조선이출입수속(朝鮮移出入手續)을 요(要)하는 것의 이출입수속(移出入手續) 및 철도성선(鐵道省線)과 만주(滿洲)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의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은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것을 제외(除外)하고 운수기관(外運輸機關)에서 이것을 대변(代辦)함.

- 1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로부터 발송(發送)하여야 할 화물(貨物)에 대한 수이출수속(輸移出手續)
- 2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에 도착(到著)하여야 할 화물(貨物: 부산영업소[釜山營業所] 착[著] 특별소하물급화물[特別小貨物扱貨物]을 제[除]함)에 대한 수이입수속(輸移入手續)
- 3 단동역(安東驛)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에 대한 중국[支那] 및 일본(日本)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
- 4 하송인(荷送人)이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반대(反對) 의사(意思)를 표시(表示)한 경우에 있어서 수이출입수속(輸移出入手續)
- 5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대변(代辦)을 하지 아니하는 뜻[旨]을 공고(公告)한 것의 수이출입수속(輸移出入手續)

육로운송수속(陸路運送手續)은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처리(處理)함. 단(但) 하송인(荷送人)이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반대(反對) 의사(意思)를 표시(表示)한 경우 및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특히 정(定)한 경우는 이에 한(限)에 부재(不在)함.

제2조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수이출입수속(輸移出入手續)의 대변(代辦)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취급(取扱) 방법은 아래[左]의 각(各) 호(號)에 의(依)함.

- 1 철도성선(鐵道省線) 세관(稅關) 소재역(所在驛: 부산[釜山]을 제[除]함) 발(發) 만주(滿洲) 착(著)과 조선(朝鮮) 및 만주(滿洲)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 발(發) 철도성선

(鐵道省線) 착(著)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하송인(荷送人)이 미리 수이출수속(輸移出手續)을 위하여 수이출면장(輸移出免狀)을 운송장(運送狀)과 함께 당해(當該) 화물발송역소(貨物發送驛所)에 제출(提出)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2 철도성선(鐵道省線) 발(發) 조선(朝鮮) 및 만주(滿洲)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 착(著) 및 만주(滿洲) 발(發) 철도성선(鐵道省線)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 착(著)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당해(當該) 화물도착역소(貨物到着驛所)에서 수하인(受荷人)이 수이입수속(輸移入手續)을 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단동역(安東驛) 발(發) 철도성선(鐵道省線)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 착(著) 화물(貨物)에 대하여 하송인(荷送人) 스스로 단동[安東]에서 일본수입수속(日本輸入手續)을 하는 경우는 수입면장(輸入免狀)을 운송장(運送狀)과 함께 단동역[安東驛]에 제출(提出)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3 전(前) 2호(號)의 규정(規定)은 철도성선(鐵道省線)과 단동역(安東驛) 간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의 중국[支那] 및 일본(日本)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에 관하여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3조(條) 본(本) 규정(規定)에서 세관소재(稅關所在) 역소(驛所)라 칭(稱)함은 아래[左]의 역소(驛所)를 말함.

1 철도성선(鐵道省線)

도쿄(東京), 시오도메(汐留), 요코하마(橫濱), 동요코하마(東橫濱), 요코하마항(橫濱港),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우메코지(梅小路),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고베항(神戶港), 쓰루가항(敦賀港), 시모노세키(下關), 나가사키(長崎)

2 조선(朝鮮)

철도성선(鐵道省線) 부산영업소(釜山營業所)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대구(大邱), 경성(京城),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 마산(馬山), 군산(群山), 목포(木浦), 인천(仁川), 진남포(鎭南浦), 원산(元山)

3 만주(滿洲)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 단동[安東], 다롄(大連)

제4조(條) 철도성선(鐵道省線) 세관소재 역소(稅關所在驛所)와 만주(滿洲)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아래[左]의 각(各) 역(驛)과 만주(滿洲)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은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청구(請求)가 유(有)한 때는 당해(當該) 발착역소(發著驛所)와 수출입역소(輸出入驛所) 간(間) 외국화물(外國貨物)로서 육로운송(陸路運送)의 취급(取扱)을 함. 이 경우에 있어서 수출입수속(輸出入手續)에 관하여는 제2조(條)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함.

우미가나가와(海神奈川), 시미즈항(清水港), 가메자키(龜崎), 한다(半田), 다케토요(武豊),

나고야항(名古屋港), 쓰루가(敦賀), 나나오(七尾), 나나오항(七尾港), 후시키(伏木), 니가타(新潟), 이마바리(今治), 윗카이치(四日市), 미나토마치(湊町), 아지카와구치(安治川口), 사쿠라지마(櫻島), 하마다(濱田), 미야즈(宮津), 사카이미나토(境港), 오노하마(小野濱), 와다미사키(和田岬), 이토자키(糸崎), 도쿠야마(徳山), 와카마쓰(若松), 하카타(博多), 오무타(大牟田), 가고시마(鹿兒島), 니시카라쓰(西唐津), 아모모리(靑森), 하코다테(函館), 미사키(御崎), 무로란(室蘭), 오타루(小樽), 구시로(釧路), 데미야(手宮), 하마구시로(濱釧路), 네무로(根室)

전항(前項)의 규정(規定)은 별도(別途)로 정(定)한 내지가치장(內地假置場) 기타(其他)의 보세지역(保稅地域) 소재역(所在驛)에 발착(發著)한 소하물(小荷物) 및 화물(貨物)에 대하여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5조(條) 하송인(荷送人)은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통관수속(通關手續)의 대변(代辦)을 하여야 할 소하물(小荷物) 또는 화물(貨物)을 탁송(託送)하고자 한 경우에 있어서는 송장(送狀·invoice) 및 운수기관(運輸機關)이 정(定)한 하물명세서(荷物明細書)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통관수속(通關手續)의 대변(代辦)을 하지 아니한 것 및 조선이출입수속(朝鮮移出入手續)을 요(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하송인(荷送人)이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전항(前項)의 하물명세서(荷物明細書)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단(但) 철도성선(鐵道省線),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 鐵道局線) 간(間) 발착화물(發著貨物)에 있어서는 하물명세서(荷物明細書)의 제출(提出)에 대신(代身)하여 당해(當該) 화물(貨物)의 가격(價格)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함으로 함.

전(前) 2항(項)에 의한 하물명세서(荷物明細書)의 양식[式紙]은 관계역소(關係驛所)에 비치(備置)하여 하송인(荷送人)의 사용(使用)에 제공함. 하송인(荷送人)은 당해(當該) 양식[式紙]에 필요사항(必要事項)을 기입(記入)하고 서명(署名)할 것을 요(要)함.

내용(內容)이 단순(單純)한 소하물(小荷物)에 대하여는 송장(送狀·invoice)을 첨부(添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관계운수기관(關係運輸機關)에서 그 수탁(受託)을 하는 것이 유(有)하여야 함. 단(但) 송장(送狀·invoice)의 첨부(添附)가 무(無)함으로써 발생(發生)한 불이익(不利益)에 대하여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6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통관수속(通關手續)의 대변(代辦)을 하여야 할 하물(荷物)에 대하여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7조(條) 또는 종전(從前)의 조선관세정률령(朝鮮關稅定率令) 제3조(條)에 의하여 수이입세(輸移入稅)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하고 또 수이출면장(輸移出免狀) 또는 증명서(證明書) 혹은 허가서(許可書) 등(等)을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8조(條) 또는 종전(從前)의 조선관세정률령(朝鮮關稅定率令) 제4조(條) 혹은 동(同) 제4조(條)의2에 의하여 재수이출(再輸移出)을 하여야 할 하물(荷物)

을 수이입(輸移入)하고 수이입세(輸移入稅)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수이입(輸移入)의 목적(目的) 및 타일(他日)에 재수이출수속(再輸移出手續)을 하여야 할 세관(稅關) 기타 필요사항(必要事項)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관세법시행규칙(關稅法施行規則) 제34조(條)제2항(項)에 의하여 외국산 화물(外國產貨物)을 수출(輸出)하고자 할 경우 및 5년 이내(以內)에 재이입(再移入)을 하여 이입세(移入稅)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조선산(朝鮮產)이 아닌 하물(荷物)을 조선(朝鮮)으로부터 이출(移出)하고자 할 경우 및 가공(加工) 또는 수선(修繕)을 위하여 이출(移出)하고 1년 이내(以內)에 재이입(再移入)을 하여 이입세(移入稅)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하물(荷物)을 조선(朝鮮)으로부터 이출(移出)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이출(輸移出)의 목적(目的) 및 타일(他日)에 재이입수속(再移入手續)을 하여야 할 세관(稅關)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9조(條) 제1항(項) 및 제2항(項)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수입원료품(輸入原料品)을 수입(輸入)하고 수입세(輸入稅)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면제(免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사용(使用)의 목적(目的), 제조자(製造者)의 성명(氏名), 제조장(製造場), 장치장(藏置場) 및 타일(他日)에 수출수속(輸出手續)을 하여야 할 세관(稅關)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8조(條) 또는 종전(從前)의 조선관세정률령(朝鮮關稅定率令) 제4조(條) 혹은 동(同) 제4조(條)의2에 의하여 하물(荷物)을 재수이출(再輸移出)하거나 혹은 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 제9조(條)제1항(項)에 의하여 제조품(製造品)을 수출(輸出)하고, 수이입(輸移入)할 때 제공(提供)한 담보(擔保)의 해제(解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하고 수이입면장(輸移入免狀) 및 공탁수령서(供託受領書) 보관증(保管證) 또는 공탁수령서(供託受領書) 보관증(保管證)을 겸(兼)한 수이입면장(輸移入免狀) 기타(其他)의 필요서류(必要書類)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하송인(荷送人)에 있어 수이출입면장(輸移出入免狀), 육양증명서(陸揚證明書) 기타(其他) 회부(廻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하인(受荷人)에게 송부(送付)를 청구(請求)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술[酒] 또는 사탕류(砂糖類)를 조선(朝鮮)에 이입(移入)하고 주세(酒稅) 또는 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의 징수유예(徵收猶豫)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 및 조선출항세령(朝鮮出港稅令) 제5조(條)에 의하여 출항세(出港稅)의 징수유예(徵收猶豫)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함이 가(可)함.

1920(大正 9)년 조선총독부제령(朝鮮總督府制令) 제19호(號)제1조(條)제2항(項)에 의하여 과세상(課稅上)의 편익(便益)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운수

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하고 또 동(同) 제령시행규칙(制令施行規則) 제1조(條)에 규정(規定)한 서류(書類)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제1항(項) 및 제 4항(項)의 규정(規定)은 조선출항세령(朝鮮出港稅令) 제4조(條)에 의하여 1년 이내(以內)에 재이입(再移入)을 하고자 하는 하물(荷物)을 이출(移出)하고 출항세(出港稅)의 면제(免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 및 동(同) 하물(荷物)을 재이입(再移入)하고 이출(移出)할 때 제공(提供)한 담보(擔保)의 해제(解除)를 득(得)하고자 하는 자(者)에 대하여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7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통관수속(通關手續)의 대변(代辦)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稅關)의 검사(檢査)(檢査)를 받을 필요(必要)가 유(有)한 때는 하물(荷物)의 포장(包裝)을 풀거나 또는 하물(荷物)의 일부(一部)를 견본(見本)으로 세관(稅關)에 납부(納付)하는 것이 유(有)하여야 함.

제8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수이출입수속(輸移出入手續)의 대변(代辦)을 할 때는 관세(關稅) 기타(其他)의 세금수수료(稅金手數料) 등(等)은 이것을 입체지변(立替支辦)하고, 도착역소(到著驛所)에서 하물(荷物)과 상환(相換)으로 수하인(受荷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단(但)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역(稅關所在驛) 착(著) 소하물(小荷物)에 대한 조선이입세(朝鮮移入稅) 기타(其他)는 수하인(受荷人)으로부터 수수(收受)한 상(上)에서 세관(上稅關)에 납입(納入)함.

중국수출관세[支那輸出關稅]는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요구(要求)가 유(有)한 때는 하송인(荷送人)으로 하여금 직접(直接) 이것을 세관(稅關)에 지불(支拂)하도록 하는 것이 가(可)함.

제9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하물수이입수속(貨物輸移入手續)의 대변(代辦)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擔保)를 제공(提供)할 필요(必要)가 유(有)한 때는 수하인(受荷人)에게 담보액(擔保額)을 통지(通知)하여 수하인(受荷人)으로부터 공탁수령서(供託受領書)의 회부(廻付)를 받는 것으로 함.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조선이출수속(朝鮮移出手續)의 대변(代辦)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擔保)를 제공(提供)할 필요(必要)가 유(有)한 때는 하송인(荷送人)에게 담보액(擔保額)을 통지(通知)하여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공탁수령서(供託受領書)의 회부(廻付)를 받는 것으로 함.

제10조(條)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시행(施行)하는 통관(通關)의 대변(代辦)에 관하여는 요금(料金)을 수수(收受)하지 아니함. 단(但) 통관검사(通關檢査) 때 당해[該<sup>1)</sup>]하물(荷物)의 수선(修繕) 등(等)을 위하여 특히 요(要)하는 비용(費用)에 관하여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제8조(條)의 규정(規定)은 전항(前項) 단서(但書)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1) 역자: 원문에는 '解'로 誤記되어 있다.

제11조(條) 수하인(受荷人)이 제8조(條) 및 제10조(條)의 관세(關稅) 기타(其他)의 지불(支拂)을 하지 아니한 때는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으로 함.

수이출입면장(輸移出入免狀)의 교부(交付)를 받는 것이 불능(不能)하거나 또는 기타(其他)의 사정(事情)에 의하여 당해(當該) 하물(荷物)을 발송역소(發送驛所)에 반환(返還)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關稅) 기타(其他)의 비용(費用)은 하물(荷物)과 상환(相換)으로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제12조(條) 수하인(受荷人)이 관세(關稅) 기타(其他)의 지불(支拂)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이출입면장(輸移出入免狀)의 교부(交付)를 받는 것이 불능(不能)한 경우 등(等)으로서 당해(當該) 하물(荷物)의 품질(品質) 기타(其他) 불가피(不可避)한 이유(理由) 때문에 발송역소(發送驛所)에 반환(返還)함이 불능(不能)한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은 임기(臨機)의 처분(處分)을 함이 가(可)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關稅) 기타(其他) 당해(當該) 하물(荷物)에 요(要)한 비용(費用)을 계산(計算)하여 과잉(過剩)이 유(有)하면 이것을 하송인(荷送人)에게 환불(還拂)하고, 부족액(不足額)은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전항(前項)의 규정(規定)은 하송인(荷送人)이 전조(前條)의 지불(支拂)에 응(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13조(條) 하송인(荷送人) 또는 하송인(荷送人)이 지정(指定)한 통관담당자(通關擔當者)가 수이출입(輸移出入) 역소(驛所)에서 운송(運送) 중(中)인 하물(荷物)에 대하여 통관수속(通關手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운수기관(運輸機關)으로부터 하물도착(荷物到着)의 통고(通告)를 받은 후(後) 세관개청시간(稅關開廳時間) 7시간(時間) 이내(以內)에 운수기관(運輸機關)의 보관(保管) 하(下)에 통관수속(通關手續)을 종료(終了)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하송인(荷送人) 또는 하송인(荷送人) 지정(指定)한 통관담당자(通關擔當者)가 전항(前項)의 시간(時間) 내(內)에 통관수속(通關手續)을 종료(終了)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시간(時間) 경과(經過) 후(後)에 대하여 하물보관료(荷物保管料)를 수수(收受)함. 단(但) 세관(稅關)의 사정(事情)에 의하여 통관수속(通關手續)을 종료하지 아니한 시간(時間)에 대하여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전항(前項)의 하물보관료(荷物保管料)는 당해(當該) 운수기관(運輸機關)이 정(定)한 도착하물(到着荷物) 인수지연(引受遲延)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관료(保管料)와 동일(同一)함.

제14조(條) 주정(酒精), 주류(酒類), 주정(酒精)을 함유(含有)한 식료(食料), 식물류(織物類), 수입원료(輸入原料)에 의한 제조품(製造品), 과자(菓子), 당과(糖菓)를 내지(內地)로부터 수출(輸出)하거나 또는 주류(酒類), 당밀(糖蜜)을 조선(朝鮮)으로부터 수출(輸出)하여 여세(戻稅)<sup>2)</sup> 또는 교부금(交付金)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그 청구방법(請求方法)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위탁(委託)함을 득(得)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물탁송(荷物託送) 때 이것을 운수

2) 역자: 조정·減稅 등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세금을 말한다.

기관(運輸機關)에 통고(通告)하고 필요서류(必要書類)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전항(前項)의 대변(代辦)을 하기 위하여 특히 요(要)하는 비용(費用)은 여세(戾稅) 또는 교부금(交付金) 수취인(受取人)의 부담(負擔)으로 함.

제15조(條) 탁송수하물(託送手荷物) 및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의 조선이출입검사(朝鮮移出入檢査)는 시모노세키(下關)·부산(釜山) 간(間) 연락선(連絡船) 내(內), 일본(日本) 및 중국[支那] 수출입검사(輸出入檢査)는 단동역(安東驛)에서 운수기관(運輸機關) 보관(保管) 하(下)에 여객(旅客) 스스로 이것을 받음이 가(可)함으로 함.

여객(旅客)이 전항(前項)의 검사(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當該) 하물(荷物)에 쇠정·봉인(鎖錠封印)이 무(無)한 것은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세관리(稅關吏)의 검사(檢査)에 입회(立會)하여 과세품(課稅品)이 무(無)한 때는 그대로 계송(繼送)의 취급(取扱)을 하는 것으로 함.

전항(前項)의 경우 당해(當該) 하물(荷物) 중(中)에 과세품(課稅品)이 유(有)하거나 혹은 당해(當該) 하물(荷物)에 쇠정·봉인(鎖錠封印)을 행함이 유(有)한 것은 부산(釜山) 혹은 시모노세키(下關) 또는 단동역(安東驛)에 유치(留置)함이 가(可)함.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當該) 하물(荷物) 도착(到着) 후(後) 7일간(日間) 무료(無料)로 이것을 보관(保管)하고, 그 이후(以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이 정(定)한 수하물보관료(手荷物保管料) 혹은 부수소하물보관료(附隨小荷物保管料)를 수수(收受)함.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전항(前項)의 수하물(手荷物) 또는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 탁송자(託送者)의 소재(所在)를 알고 있음을 득(得)한 때는 즉시 당행(當該) 하물(荷物)을 억류(抑留)하고 있는 역소(驛所)를 통고(通告)하고, 탁송자(託送者)의 지시(指示)에 의하여 이것을 처리(處理)함.

전항(前項)의 경우에서 수하물(手荷物) 또는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 탁송자(託送者)의 청구(請求)가 유(有)한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에서 당해(當該) 하물(荷物)의 통관수속(通關手續)을 대변(代辦)함.

제7조(條), 제8조(條), 제10조(條) 및 제12조(條)의 규정(規定)은 전항(前項)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제3항(項)의 하물(荷物)로서 쇠정·봉인(鎖錠封印)을 행함이 유(有)한 것이 도착(到着) 후(後) 3개월(箇月)을 경과(經過)하여도 탁송자(託送者)의 소재(所在)가 불명(不明)한 때, 운수기관(運輸機關)은 세관리(稅關吏)의 입회(立會)를 구(求)하여 탁송자(託送者)의 위험(危險)과 비용(費用)으로써 해장(解裝)하여 내용(內容)의 검사(檢査)를 하고, 탁송자(託送者)를 알고 있음을 득(得)한 때는 제3항(項)에 준(準)하여 취급(取扱)을 함.

제16조(條) 전조(前條)제3항(項)에 의하여 수이출입역소(輸移出入驛所)에 유치(留置)함이 가(可)한 수하물(手荷物) 또는 부수소하물(附隨小荷物)이 철도성선(鐵道省線) 또는 조선총

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세관소재 역소(稅關所在驛所)에 도착(到著)함이 가(可)한 것일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은 그 도착역소(到著驛所)까지 외국화물(貨物)로서 육로 운송(陸路運送)을 하고, 탁송자(託送者)는 당해(當該) 도착역소(到著驛所)에서 수이입수속(輸移入手續)을 함이 가(可)한 것으로 함. 단(但) 철도성선(鐵道省線) 착역(著驛)에서 조선이출수속(朝鮮移出手續)을 함을 득(得)하지 아니한 것 및 중국[支那] 수출수속(輸出手續)이 미제(未濟)인 것은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전항(前項)의 경우에서도 탁송자(託送者)의 청구(請求)가 유(有)한 때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은 그 수속(手續)을 대변(代辦)함.

제7조(條), 제8조(條), 제10조(條) 및 제12조(條)의 규정(規定)은 전항(前項)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 부 칙(附則)

제17조(條) 본(本) 규칙(規則)은 1927(昭和 2)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제18조(條) 본(本) 규칙(規則)은 별도(別途)로 정(定)한 경우를 제외(除外)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을 경유(經由)하여 일본(日本) 내지(內地)와 만주(滿洲: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을 제[除]함) 간(間)에 발착(發著)하는 연락하물(聯絡荷物)에 대한 통관방법(通關方法)에 관하여 이것을 준용(準用)함.